

2021

치매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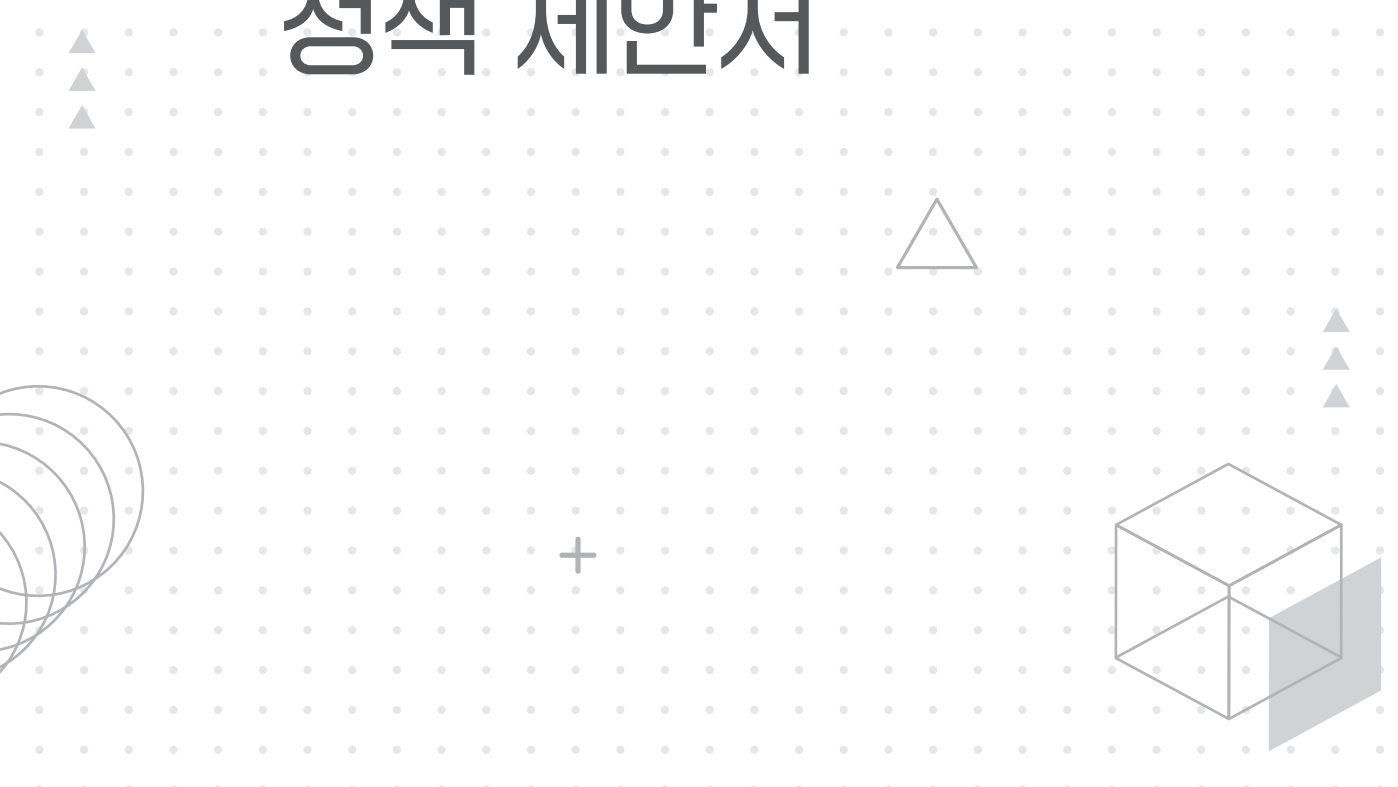
2021

치매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2021

치매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2021

치매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CONTENTS

01	치매 보조기기(복지용구) 품목 확대	06
	인지/기억, 안전, 심리/정서 관련 품목 확대	
02	치매 보조기기 전달체계 마련	11
	보조기기 전문 서비스의 필요	
03	치매 보조기기 관련 법/제도 개선	15
	법/제도 개선을 통한 치매 보조기기 지원 확대 필요	
04	치매 보조기기 R&D 확대	21
	한국형 치매 보조기기 연구개발 필요	
	참고문헌	23

발간문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20년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83.2만명으로 추산되며 치매 유병률은 10.3%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치매 노인 급증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제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정부 발표에 의해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15년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설치, 치매안심센터 설치(전국 256개), 치매안심병원 지정, 치매조기검진 및 관리체계 마련과 더불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적, 인적자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적 부담감,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및 보호자의 부담감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센터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및 보호자의 부담감을 직접적이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조기기의 지원 및 효과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재가 치매노인이 보조기기를 사용함에 따라 그들의 신체 및 인지기능을 보완하고 이들을 케어하는 보호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총 285명의 치매노인에게 개개인의 상황 및 환경에 따른 맞춤형 보조기기 4품목을 지원하였으며, 본 사업 수행의 타당성 기초 연구를 통해 재가 치매노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평가지 및 만족도 조사지를 개발하였으며, 이듬해 재가 치매노인의 보조기기 사용 효과성 검증 및 확대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가 치매노인 보조기기 지원 효과성 검증 및 확대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지원 대상자의 돌봄제공자(n=23) 중 95% 이상은 보조기기를 사용하며 치매노인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96% 이상의 보조기기들이 치매노인에게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중인 보조기기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3%로 나타났으며, 2019년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n=67) 73%는 심리상태 개선이 있었고, 71%가 인지기능 증진을 보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70%의 지원 대상자는 일상생활 수행에 개선이 있었으며, 사용자에 대한 효과적 측면 전체 항목(신체기능향상, 인지기능향상, 심리상태개선, 일상활동수행개선, 의사소통향상, 안전관리개선)에서 의미있는 결과(3.65/5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효과성 연구를 통해 보조기기가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치매노인 유관기관 종사자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일랜드(Ireland) 치매 보조기기 서비스 가이드(Implementing Assistive Technology in Dementia Care Services_A Guide for Practitioners)를 번역 및 보급하였습니다.

센터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5년 동안 치매노인의 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 심도가 있게 살피고, 보다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치매노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무거운 어깨와 함께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01 치매 보조기기(복지용구) 품목 확대

인지/기억, 안전, 심리/정서 관련 품목 확대

I 현황과 문제

1. 현황

- 국가적 차원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치매관리법 제정('11.8월) 및 시행('12.2월)과 더불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기(복지용구)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2021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르면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고 있음
 - 사업 운영방법 내 조호기구 필요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안내를 명시함
- 現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품목의 경우 구입품목 10종, 대여품목 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2종의 품목이 지원되고 있음

<現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품목>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벽, 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 국외 치매 보조기기 분류체계에 따르면, 치매의 임상적 특징을 고려한 기억(memory), 안전(safety), 일상생활(daily living) 등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영국의 경우 치매노인 보조기기 분류를 크게 일상생활(daily living), 안전(safe), 안전한 보행(safer walking), 원격의료(telecare), 업무(engagement),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레저(leisure) 7개로 구분(Alzheimer's Society, 2018)
 - 아일랜드의 경우 치매노인 보조기기 분류를 기억(memory), 안전(safety), 의사소통(communication), 오락(entertainment), 추억(회상)하기(reminiscence) 5개로 구분(Genio, 2015)
 - 미국의 경우 치매 보조기기를 크게 기억 및 지남력 손상(memory impairment and disorientation), 안전(safety), 감정상태 및 행동문제(emotional states behavioral problems) 3개로 구분(Keeffer 등, 2010)

2. 문제

- 現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품목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 유형이 일상생활 또는 이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치매 특성을 고려한 품목은 배회감지기 등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나타남
- 치매에 따른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복지용구 선택 시 인지/기억/심리와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전무함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필수 보조기기 리스트(APL) 50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국내 공적급여와 비교하였을 때 인지와 관련된 시간관리, 투약 알림 품목, 안전 및 의사소통 관련 품목은 50%로 나타났으며, 이중 투약 알림, 시간관리, 단순화된 휴대폰과 같이 치매 노인이 사용 가능한 품목은 대부분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II 제안 및 기대효과

1. 제안

- 인지/기억, 안전, 심리/정서 관련 품목 확대
 - 치매의 임상적 특징을 고려한 기억(memory), 안전(safety), 일상생활(daily living) 범주의 보조기기 품목 확대 필요
 - 안전 관련 보조기기, 모니터링 관련 보조기기, 심리/정서 관련 보조기기가 치매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에 포함되어야 함

<치매 보조기기 분류체계(안)>

대분류체계	세부항목 체계		
	분류명	ISO 기준	설명
기억 (memory)	투약용 보조기기	1 04 19	약물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약물을 측정, 분배, 조정하는 보조기기 일회용주사기, 좌약 주입용 장치 등
	정보, 표시, 기억, 신호전달용 보조기기	3 22 27	신호장치, 음성시계, 달력 및 시간표, 기억 지원 보조기기 등
인지 (cognitive)	인지 치료용 보조기기	1 04 26	인지검사 및 평가용 도구 기억손상이 있는 사람을 지지하기 위하여 인형치료와 기억자극 치료를 포함한 인지치료용 로봇이 포함됨
	기억 훈련 보조기기	3 05 12 03	
	연속성 훈련용 보조기기	3 05 12 06	단어, 동작, 숫자 등을 정확한 순서로 입력하도록 훈련하기 위한 보조기기 주의력 훈련용 보조기기
	주의력 훈련용 보조기기	3 05 12 09	집중력 및 기타 집중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보조기기
	개념 발달 훈련용 보조기기	3 05 12 12	색, 크기, 형태와 같은 개념의 이해를 위한 훈련용 보조기기
일상생활 (daily living)	일상적인 개별 활동 훈련용 보조기기	3 05 33 06	
	개별 가동성 훈련용 보조기기	3 05 33 09	건기와 휠체어 사용하기 훈련을 위한 장비 등이 포함됨
	가사 훈련용 보조기기	3 05 33 12	
	옷입고 벗기용 보조기기	3 09 09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벗을 때 보조하기 위한 장비 기기 양말 및 팬티스타킹 입고 벗기용 보조기기, 옷 고정용 장치, 옷 입고 벗기용 고리 또는 막대, 단추끼우개 등
	화장실용 보조기기	3 09 12	이동변기, 변기, 간이변기 등
	씻기, 목욕, 샤워용 보조기기	3 09 33	목욕보드,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용 목욕 및 샤워 매트와 테이프 등
	손발 관리용 보조기기	3 09 36	손, 손톱, 발, 발가락, 발톱 등을 관리하는데 보조해주는 장치 손발톱 솔, 줄, 가위, 손발톱깎이 등
	머리카락 관리용 보조기기	3 09 39	머리카락 감기와 정돈하기를 위한 장치
	식사용 보조기기	3 15 09	음식 및 음료 준비용 보조기기, 음식 정량배분용기

대분류체계	세부항목 체계		
	분류명	ISO 기준	설명
안전 (safe)	환경 개선용 보조기기	3 17 03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제어함으로써 유해한 환경 영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3 18 18	핸드레일 및 지지레일, 고정형 손잡이와 핸드그립 등
	개인안전 훈련용 보조기기	3 05 27 09	외부의 위험과 위험한 개별행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사용되는 보조기기
	방향 안내용 보조기기	3 12 39	주변 환경을 안내하고 유도하고 확인하고 인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기기
	주택 기타 토지용 안전 설비	3 18 33	바닥 및 계단용 미끄럼 방지 재료, 리프트용 안전장벽, 울다리, 문 등
의사소통 (communication)	시간의 이해 훈련용 보조기기	3 05 15 09	시간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
	돈의 이해 훈련용 보조기기	3 05 15 12	돈의 기본적 개념과 기능을 훈련하는 보조기기
사회참여 (social participation)	여가활동 훈련용 보조기기	3 05 27 03	여가활동에 참여하도록 가르치는데 사용되는 보조기기
	사회적 행동 훈련용 보조기기	3 05 27 06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가르치는데 사용되는 보조기기
레크리에이션/레저 (recreation/leisure)	놀이용 보조기기	3 30 03	규칙이 있는 게임, 구조적이지 않거나 체계화되지 않은 게임, 자발적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기기

●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 확대

- 現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의 구입품목 10종, 대여품목 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2종에서 구입품목 식사보조기기, 알람약케이스, 인지활동 보조기기 3종 추가, 대여품목 팔, 다리, 몸통 운동장치 1종 추가,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치매인형 1종 추가 필요

<복지용구 품목 확대(안)>

	구입품목(13종)	대여품목(7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3종)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치매인형(추가)

	구입품목(13종)	대여품목(7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3종)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식사보조기기(추가) • 알람약케이스(추가) • 인지활동 보조기기(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팔, 다리, 몸통 운동장치(추가) 	

2. 기대효과

- 안전 및 모니터링 관련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치매노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도모하며 보호자의 노동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심리/정서 관련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치매노인의 우울감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02 치매 보조기기 전달체계 마련

— 보조기기 전문 서비스의 필요

I 현황과 문제

1. 현황

- 現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의 경우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에 대해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구입 또는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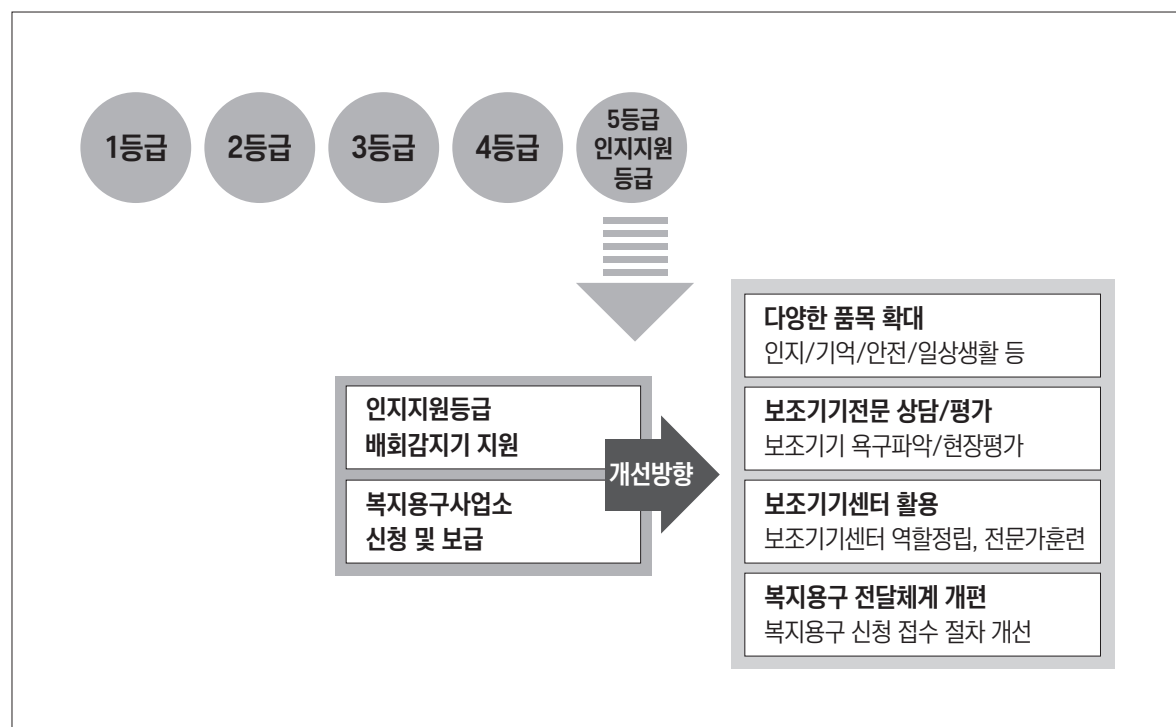
- 장기요양급여대상자가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시 대상자가 직접 품목을 선택하여 구입하는 형태로 사용자의 신체기능 및 환경특성에 따른 전문서비스가 부재한 상태임
- 이러한 전문서비스의 부재는 수급자로 하여금 보조기기의 선택 제한 및 부적합한 보조기기 사용을 초래할 수 있음
- 2017년 복지용구 생산 원가를 부풀려 부정수급 및 본인부담금 면제 조건으로 수급자를 모아 소개비를 챙긴 판매행위 등 약 1,370억 원 부정수급 사례가 나타남(이데일리, '17.11.21)
- 현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치매 관련 정책 수준에서 보조기기 제도 문제점 중 하나로 치매 보조기기 전문서비스의 부재가 나타남(재가 치매노인 보조기기 효과성 검증 및 확대 방안 연구, 공진용 외, 2019)

II 제안 및 기대효과

1.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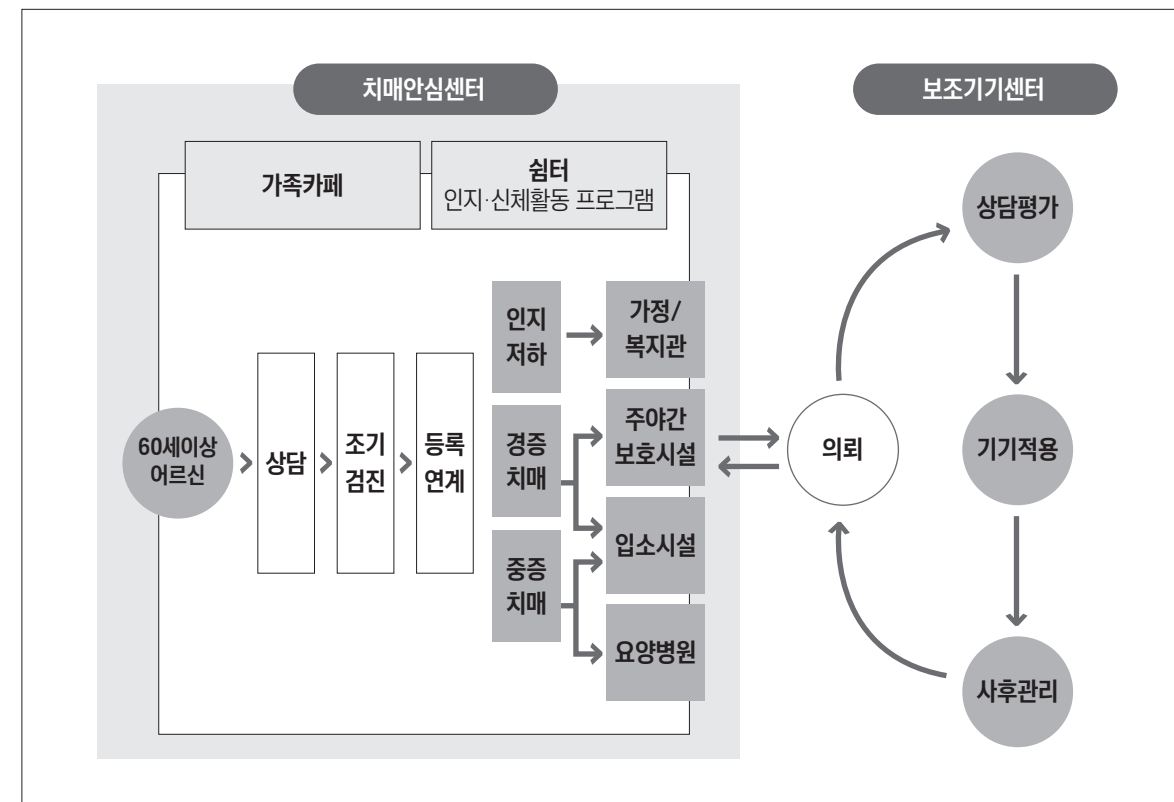
- 복지용구사업소와 보조기기센터 연계
 - 복지용구 지원 품목 중 치매 보조기기로 배회감지기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에 따라 품목 확대가 필요
 - 치매 보조기기 품목 확대에 따른 복지용구 전달체계 개편 및 보조기기센터 업무내용 개편과 관련 근거 규정 필요
 - 치매 보조기기 전문 상담/평가를 전문적으로 실시 가능한 전문가 활용 필요
 - 전문가에 의한 상담평가와 환경평가를 통한 당사자의 욕구 파악과 품목의 선정 및 보급이 연계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복지용구 확대 및 전달체계 개편 내용(안)>



- 치매안심센터와 보조기기센터 연계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판정 후 보조기기 대상 의뢰를 통해 보조기기센터는 대상자와 보조기기 상담평가 및 기기지원, 환경개조 서비스 필요 유무 파악
 - 전문 평가를 통한 공적급여 서비스 연계 및 적용 보조기기, 지원된 서비스 등 치매안심센터에 결과 공유
 - 기관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e-시스템 구축 및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제도 마련 필요

<치매안심센터와 보조기기센터 연계(안)>



- 치매전문보조기기센터 설립
 - 전국 17개 광역단위의 치매전담 보조기기 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지원
 - 치매 전문가 배치와 더불어 돌봄 및 보조기기 사용자에게 대한 전문적 교육 가능
 - 치매전문보조기기센터 설립을 통해 치매 및 인지장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의 가족, 돌봄제공자, 요양원 근무자, 자원봉사기관 등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치매 보조기기 상담평가 및 정보제공, 대여서비스 등 전문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독립적인 광역단위 치매전문보조기기센터 설립(안)>



2. 기대효과

- 보다 체계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통한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 향상 도모
 - 전문가 개입을 통한 올바른 보조기기의 선택 및 사용 효과성 기대
- 치매 보조기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부정수급을 예방함
 - 공적급여 연계 및 지원을 통한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신뢰도 향상 기대
 - 전문서비스를 통한 보조기기 욕구 창출 및 산업화를 이끌어내어 사회서비스와 산업이 공존할 기회로 작용

참고 해외 치매 보조기기 운영 사례(아일랜드)

2014년 아일랜드는 치매 국가 전략을 선포하였으며, 2015년 치매 전담 기관인 National Dementia Office(NDO)를 조직하였다. NDO는 치매 전략 실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적용하며 전략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관으로 아일랜드의 보건국, Health Department 산하 HSE(Health Service Executive; 건강 서비스 집행부)에 소속된 기관이다. 아일랜드에서는 국가 치매 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에는 치매 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Memory Technology Library(MTL)가 설치되었다. MTL에서는 치매 노인의 인지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기기를 구비하고 상담과 대여를 실시하고 있다. MTL 프로젝트는 MTL을 설치하고 치매 또는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보호자들에게 관련 보조기기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03 치매 보조기기 관련 법/제도 개선

법/제도 개선을 통한 치매 보조기기 지원 확대 필요

I 현황과 문제

1. 현황

- 국내 장애인 및 노인과 관련된 법제도 중 치매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법률로는 치매관리법, 보조기기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과 관련한 법이 있음

2. 문제

- 치매관리법 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20.9월) 하였으나, 여전히 의료적 지원 및 인적자원 활용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치매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과 관련한 내용이 전무함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현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되고 있으나 교부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한정됨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대상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음

II 제안 및 기대효과

1. 제안

- 치매관리법 개정 및 보조기기 관련내용 신설
 - 치매관리법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항(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 “치매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내용 추가

-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제12조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2조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뒤로 “제12조4(치매환자의 보조기기 지원사업)” 법조항을 신설
- 제16조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항(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호(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뒤로 제8호(치매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연계사업)” 내용 추가
- 제17조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뒤로 “18조(광역치매보조기기센터의 설치) 제1항(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광역치매보조기기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호(치매보조기기 관련 상담 및 평가), 제2호(치매보조기기 정보제공), 제3호(치매보조기기 맞춤형개조), 제4호(치매보조기기 사후관리), 제5호(치매보조기기 교육 및 홍보), 제6호(치매가족의 보조기기 지원) 내용 신설

<치매관리법 개정(안) 신/구 대조표>

	기존 법 내용	추가 및 신설 내용
제6조	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환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환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치매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3	해당없음	제12조3(치매환자의 보조기기 지원 사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존 법 내용	추가 및 신설 내용
제16조2	제16조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계획 2. 치매연구 3.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4.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 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 및 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제16조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계획 2. 치매연구 3.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4.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 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 및 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치매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연계사업 9.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제18조	해당없음	제18조 광역치매보조기기센터의 설치 ①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광역치매보조기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보조기기 관련 상담 및 평가 2. 치매보조기기 정보제공 3. 치매보조기기 맞춤형개조 4. 치매보조기기 사후관리 5. 치매보조기기 교육 및 홍보 6. 치매가족의 보조기기 지원

● 보조기기법 개정 및 치매 보조기기 관련내용 신설

- 보조기기법 제3조(정의) 제1항(장애인등이란)에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등을 말한다” 내용 추가
-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제1항(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자,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항(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뒤로 “제7항(치매환자에 대한 보조기기 사업 연계 및 수행)” 내용 신설

<보조기기법 개정(안) 신/구 대조표>

	기존 법 내용	추가 및 신설 내용
제3조	<p>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p> <p>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3. “보조기기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p>	<p>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등을 말한다.</p> <p>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3. “보조기기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p>
제14조	<p>제14조 지역보조기기센터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대여, 수리, 맞춤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p>	<p>제14조 지역보조기기센터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대여, 수리, 맞춤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치매환자에 대한 보조기기 사업 연계 및 수행 8.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p>

● 국가정보화기본법 지원 대상 범위 개정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등을 말한다**” 내용 추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신/구 대조표>

	기존 법 내용	추가 및 신설 내용
제34조	<p>제34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p> <p>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p>	<p>제34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p> <p>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매환자 4. 그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p>

● 노인장기요양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기준 개정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제1항(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에 “단, 치매 관련 급여는 보조기기센터에 의하여 제공한다.” 내용 추가
- 제3항(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제2호(대여품목) 중에서 바. 배회감지기 뒤에 “사. 배회감지기 이외 치매 관련 보조기기 추가” 내용을 포함

<노인장기요양법(복지용구 급여범위/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 대조표>

	기존 법 내용	추가 및 신설 내용
제2조	<p>제2조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p> <p>.....</p>	<p>제2조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p> <p>.....</p>

	기존 법 내용	추가 및 신설 내용
제2조	③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사. 경사로	③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사. 배회감지기 이외 치매관련 보조기기 추가 아. 경사로

2. 기대효과

- 치매 보조기기 관련 법/제도 개정을 통한 급여/품목 확대 및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전문서비스 및 급여/품목 확대에 따른 치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의료적, 인적 지원의 한계를 벗어나 치매 노인의 존엄을 유지 할 수 있음
 - 보조기기 활용을 통해 독립 또는 보다 적은 인적 도움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

04 치매 보조기기 R&D 확대

한국형 치매 보조기기 연구개발 필요

I 현황과 문제

1. 현황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9월)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의 핵심과제로 유관기관 자료연계를 통한 치매종합정보DB 구축, 치매 관련 코호트 구축 및 통합 관리, 치매 연구 통합 플랫폼 구축, 인지능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ICT 기술을 활용한 주거안전 강화로 나타남
- 2020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보조기기의 생산, 제조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업체는 9.5%로 나타남

2. 문제

- 현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치매 관련 정책 수준에서 보조기기 제도 문제점으로 치매 보조기기 R&D 부족 의견이 도출됨
 - 치매 관련 보조기기 서비스 확대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치매 보조기기 시장 확대를 위해 R&D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62점/10.0점으로 나타나 치매 보조기기 품목의 확대와 더불어 시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기술을 접목하는 R&D 사업 또한 활성화가 필요(재가 치매노인 보조기기 효과성 검증 및 확대 방안 연구, 공진용 외, 2019)

II 제안 및 기대효과

1. 제안

- 다양한 영역의 보조기기 연구개발 필요
 - 복지용구에서 지급 서비스되고 있는 배회감지기 뿐만 아니라 이외 인지, 기억, 안전, 의사소통, 사회참여, 레크

리에이션 및 레저 영역 등의 다양한 영역의 보조기기 연구개발 필요

- 치매 보조기기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D/B) 개발 필요

-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보조기기의 국산화 필요

●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기기의 연구개발 필요

- 치매노인의 삶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감성지능형 보조기기의 연구개발 필요

- 치매노인을 보조하는 데이터는 지역사회에 저장 및 관리하여 의료기관이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치매노인이 요양기관 밖에서도 기능 수준에 맞는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2. 기대효과

● 치매노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보조기기 사용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

- 보호자의 보호 경감에 도움

-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노인 개개인의 기능 수준에 맞는 안전하며 독립적인 활동 수행 가능

●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정보 활용 및 이용의 수월성 확대

● 치매 보조기기의 국산화 및 국외 수출 기대

참고문헌

- 공진용, 김정현, 김미정, 안나연(2019). 재가 치매노인 보조기기 효과성 검증 및 확대방안 연구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2021). 온택트(ontact) 보조기기 심포지엄 치매노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방안

- 보건복지부(2021). 2021 치매정책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매관리법[시행 2021. 6. 30.][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일부개정]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8. 12. 30.][법률 제14891호, 2017. 9. 19., 일부개정](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 2013. 11. 23.][법률 제11764호, 2013. 5. 22., 일부개정](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2021. 6. 30.][법률 제17777호, 2020. 12. 29., 일부개정](law.go.kr)

- 국립재활원(2021). 2020년 보조기기 산업실태 조사

- 이데일리(2017.11.21.). 원가 부풀려 433억 챙긴 복지용구 업체 무더기 적발

2021

치매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간일 2021. 11.

발간처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발행인 강인학

편집인 권성진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130
누리센터 1,2층

전 화 031-295-7363

팩 스 031-295-7365

홈페이지 www.atrac.or.kr

함께 만든 사람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센터장

권성진 연구실장

김은평 팀장

자문위원

박영란 교수(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박주현 사무국장(경기도광역치매센터)

김용현 과장(前 한국장애인개발원)